제206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국 회 사 무 처

1999년8월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2. 범죄신고자보호법안
3.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5.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6.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7.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8.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9.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0.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12.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13. 국방대학교설치법안
14.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15.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
17.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18.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19.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20.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21.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22.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
23.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
2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26. 화장품법안(대안)
27.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28.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9.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30.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3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대안)
33.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34.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35.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36.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3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38.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39.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
40.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 3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 10
2. 범죄신고자보호법안(정부 제출) ····· 11
3.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김중위 의원 외 24인 발의) ····· 15
5.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6.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16
7.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정부 제출) ····· 16
8.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7
9.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10.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8
11.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12.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13. 국방대학교설치법안(정부 제출) ····· 21
14.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15.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2
1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2
17.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설훈·장영철·손세일·박범진·노무현·김봉호·박상천·정균환 의원 외 97인 발의) ····· 23
18.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이해구·이상배·이길재·정우택·김문수·김병태·노승우·정일영 의원 외 21인 발의) ····· 23
19.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20.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21.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22.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정부 제출) ····· 24
23.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박세직 의원 외 54인 발의) ····· 26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29
2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26. 화장품법안(대안)(정부 제출) ····· 30
27.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28.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1
29.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 31
30.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 31
3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 31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3
33.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 34
34.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정부 제출) ····· 34
35.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정부 제출) ····· 34
36.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정부 제출) ····· 34
3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정부 제출) ····· 35
38.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정부 제출) ····· 35
39.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박성범 의원 외 37인의 소개로 제출) ····· 36
40.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12인) ····· 37

(14시20분 개의)

○의장 박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주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o 5분자유발언

○의장 박준규 오늘 아홉 분의 5분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구 서구 갑 출신이신 백승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홍 의원 대구 출신 백승홍 의원입니다.

이 정권은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할 것입니까? 내각제 사기극이 그러했고 급기야 집권 세력은 민심이반 현상을 호도하기 위해 야당 의원 후원금 계좌추적이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야당 파괴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민생을 최우선한다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문제 역시 거짓말과 하루살이식 부나비 정책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으니 참으로 나라 장래가 걱정됩니다.

대구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위천공단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내 지정',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여 '아직도 4개월 남았다.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 재차 방문하여 '금년 상반기 중 매듭짓겠다'라고 확약하고 공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대구를 방문하여 '금년 상반기 중 매듭짓겠다', 국회 답변을 통해 '미 알곤사의 용역 결과 위천공단을 조성하더라도 낙동강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답변한 바 있고 부산 출신 권철현 의원 질문에 '위천공단 상반기 중 지정은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위천공단 지정에 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까지 받아 놓고도 또다시 부산 측의 반발, 설득 운운하며 상투적 수법으로 지역 갈등을 계속 조장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그도 모자라 낙동강 상·하류 지역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갈갈이 찢어 놓기 위해 국회에서 마찰과 논란만 빚었다 철회된 상수원특별조치법을 둔갑시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잔꾀까지 연출하며 자신들의 약속 파기를 1000만 영남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서운 책동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는 수천 년간 뿌리를 함께해 온 1000만 영남인들의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즐기는 지역분열 책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위천공단을 더 이상 낙동강수질과 연계시키지 말고 즉시 지정하고 1000만 영남인들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는 데 가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질로 고통받고 있는 낙동강 하류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때를 놓치면 큰 불행을 자초합니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치논리에 의한 기회주의적 발상을 청산하고 정부의 책임 아래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등원 이후 지금까지 지방도시 지하철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적하고 지방재정

의 위기는 곧바로 국가적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 측에 수없이 촉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마이동풍식으로 일관하였고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묻어 둔 채 이를 민심잡기의 호재로 보고 정략적으로 악용, 지방도시를 넘나들며 장미빛 약속을 남발하는 등 하루살이식 국정을 펼쳐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추경 시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7월 말까지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200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재정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교통공단의 설립으로 지하철건설 운영을 정부가 맡든지 불균형으로 인한 부채를 정부가 전액 인수하든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든지 택일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임시모면식의 대책이 되풀이될 경우 대구시민들은 지하철 1호선 운행중단, 2호선 건설중단, 국세납부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간 여러 차례 대구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분노의 표시로 금일 오전에 국회 앞에서 대구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 구의원, 시민단체대표 등 200여 명이 항의농성을 하였고 지금은 방청석에서 침묵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 정권은 직시하십시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정권은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정권입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정권은 분노한 국민에 의해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정권보신만을 위한 사악한 국정운영은 나라의 큰 불행을 자초하고 끝내 국민에 의해 퇴진당한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준규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 완산 출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40개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왜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한나라당은 주장하기를 왜 금년 말까지 내각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해 놓고 그것을 연기하겠다고 하느냐 이 점을 붙잡고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된다, 이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각제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폈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당헌 강령을 보면 대통령중심제를 해야 입법·행정·사법 3부가 견제 균형을 이루어서 자율과 책임을 다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령에 또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각제를 지금 직접 하고 들어가는 것은 나라에 대단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국민의 요구와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은 내각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고 국민 앞에 그 내용을 밝히고 또 대통령께서는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셨고 국무총리는 그러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세하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본 의원은 아, 한나라당도 그야말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성명을 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무슨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통에 그야말로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한나라당 정부의 경제실책에 의해서 온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의 정부가 노심초사를 했습니까?

저는 한나라당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

민회의나 여당에서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하면 또 그러면 내각제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에서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내실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즉각 철회를 하고 이제부터 국민을 향해서 우리 국민이 왜 이 시점에서 내각제 논의로 해서 국정이 혼란이 온다거나 국정에 어려움이 와서는 왜 안 되겠다고 국민이 생각하는가, 이 점을 한나라당이 직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이 지긋지긋하게도 싫어하는 이 정쟁으로,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이 정국이 영일이 없고 수해와 태풍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정쟁에만 늘 일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강령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그렇게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결단을 통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 내각제 논의를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정쟁을 위해서 한나라당에 이익이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신 나머지 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즉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철회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로 정도를 걸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규 의장, 신상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신상우 다음은 대전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면 정권이 불안하고 개혁을 안 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고통스러운 개혁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에 관해서 국민과 함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정치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개혁은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의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철저한 자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개혁은 해프닝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 지도자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때 지도자는 지도력을 잃고 말 것이며 그가 추진하는 개혁은 소리만 요란하지 내실이 없는 원님행차식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할 경우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는 훌륭한 정신과 헌정역사를 확립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미국의 특검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경우도 당분간 특검제를 한정적으로나마 도입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부정부패 사건이나 고위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덮어 둔다는 국민적 의혹의 눈길을 잠재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도자는 특히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나라와 역사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지도자는 정파를 버려야 합니다.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려야 합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돈을 챙겨 퇴임 후에 쓰고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버려야 합니다. 역사 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공명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노여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우리 정치권이 정치개혁의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구제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정치문화와 국민의식하에서는 중선거구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가는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현역의원 70~80%가 탈락할 수밖에 없고

선거구역과 선거구민 5~6배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 간, 또는 출마 예정자 간에 사활을 건 지역구 활동경쟁으로 인해서 선거비용이 현재보다 5배, 6배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구 관리경쟁 과열로 인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당선 후에도 동일선거구 내에 당선자 간의 상호 음해와 주민 환심사기 경쟁과열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선거제는 국가적으로 볼 때 결국 개악을 향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선거구제 논의는 이를 즉각 중지하고 개선을 향한 개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효율과 낭비, 즉 거품을 제거하고 높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구조조정은 빨리 한 건 해 보여야겠다는 공명심을 가지고 착상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빨리 해치우려고 했던 교원정년 인하조정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 시책 중에서 특히 출연연구소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축소제일주의식 구조조정 때문에 정부의 출연연구소, 이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지금 연구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의 살길은 과학기술 연구개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출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국방도 과학기술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과학자가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60만 우리 국군의 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3만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축소 제일주의식 구조조정 시책을 즉시 중지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연구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즉시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자들이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아제까지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순결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가오는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다음은 경북 안동 갑 출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안동 출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입니다.

현 공동정부는 출범 이후에 갖은 풍설로, 총풍이다 북풍이다 세풍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설을 일으켜서 야당 흠집 내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급기야 풍설이 광풍으로 되어 야당후원회 계좌까지 추적하는 야당말살정책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현 공동여당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기업인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정말 이제 야당에게 정치자금을 줘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야당에게 후원금을 주는 기업을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일일이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정치사찰 음모를 꾸며 내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하는 것이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소위 도덕성을 기반으로 성립했다고 하는 공동여당의 도덕성 기준입니다.

최근 선관위에서 발표한 상반기 후원회 금액을 보면 이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상반기에 국민회의는 160억, 자민련은 48억, 한나라당은 13억 후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여당유전, 야당무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1세기에 정말 이 나라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야당에게 이렇게 정치자금을 말려 버리는 정치행태가 계속될 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정부 공동여당에서도 틈만 있으면 국정을 같이 논하는 우리 한나라당을 통

해서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항상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회의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회의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한나라당이 세금 도둑이라면 오늘 이 자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한나라당과 같이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정말 해야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히 가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이번 검찰의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추적 과정은 7년이나 소급을 해서 어떤 법적 권한을 넘어서 야당후원회 계좌를 사찰함으로 해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이 우리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해서, 야당 총재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사정을 했고 표적사정을 했고 그리고 야당 말살을 해 왔다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후원회 계좌 추적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한 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더 이상 특별수사부를 만들어서 정치검찰이다 다음에 권력의 시녀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진정 이번에 관계된 관계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후원회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백지영장을 발급해 준 법원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법원이야말로 정말 인권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백지영장을 발급해 주는 법원이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의 인권사항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번 백지영장을 발급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향후 야당 말살이나 표적사정에 법원이 어떤 협조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이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당후원회 계좌 사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응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다음은 강원도 철원·화천·양구 출신 이용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금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경기·강원 북부지역 중 철원·화천·양구 출신의 이용삼 의원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치 못한 가운데 발언이라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청난 재난으로 고통받고 계신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가족께는 명복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열대의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언론 방송사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과 구호물품을 보내 주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재현장 거의 전역을 돌아본 후 금번 수재를 계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대책과 다시는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96년 엄청난 폭우 이래 내리 3년간에 일정 지역의 집중적인 폭우는 이제 우연이 아닌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의 한 유형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예보, 완벽한 치수대책, 그리고 재난 시 비상동원 체제 구축을, 또 사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재난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중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해복구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일정부분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일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전 국민이 동참하여 모금하고 있는 수재의연금은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생계대책비 또는

위로금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 농민의 생계기반인 농경지 복구지원은 농민의 자부담 및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복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부 보조지원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또는 전액 보조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작물 피해는 단위 농가별로 피해 조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농작물 종류별로 피해현황을 구분 파악하여야 하며 대파대 또는 최소 생계대책비 지원 차원이 아닌 실제 수확예상가 또는 투자원가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조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가 침수로 인한 물품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침수 가옥의 가재도구, 생필품에 대해서는 고작 몇십만 원 정도 주택수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의 가장 큰 피해이자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상가물품 피해도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침수가옥 지원도 보조금 지급이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재의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하천 복구는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은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복구비 전액 정부 보조로 지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섯째, 시설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닌 원인을 치유하는 개량복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교량 등 시설은 손괴가 없이 그대로인 채, 그 교량의 설계·시공 잘못으로 인한 범람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초래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 내역조사 시는 주변 피해만 조사 보고되고 원인을 제공한 교량 등 시설의 제거 및 재시공예산은 누락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원인제거 및 개량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되고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일곱째, 도로 및 하천 부지에 속한 사유지로 인하여 도로 또는 하천의 노폭·하폭이 좁고 굴곡 설계되어서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제방이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복구 시는 사유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하천·도로 등에 편입시켜 노폭·하폭을 넓혀야 하며 복구예산 편성 시 사유지의 매입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여덟째, 전방지역의 작전용 교통호, 산림관리용 임도공사 이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대형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교통호, 산림청의 임도공사는 지형을 살펴서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한 배수로 시설 등을 갖추면서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전방 산악지역의 전 교통호, 임도에 대한 정밀조사와 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조사 및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아홉째, 금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전국의 댐, 저수지, 제방, 하천을 정밀 조사하여 치수계획을 즉각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대폭 증액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편성을 제안합니다.

열째, 재난 시 긴급 비상동원 체제 정비 및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부에는 예비군 담당부서가 있고 또 전국의 예비군 중대장은 사무관급 공무원 예우를 받고 있지만 재해 또는 비상시 예비군은 구경조차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에 민방위국이 설치되어 있고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시에는 민방위란 말조차 들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대의 현역장병도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터지는 등 긴급을 요할 시에는 동원이 안 되고 있다가 폭우가 멎고 응급복구 시에 대거 동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본 듯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재난 또는 재해대비를 위한 긴급비상동원 체제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재정비와 구축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에 자율적으로 조직, 활동하고 있으면서 금번 재난 시에 많은 활약을 해 준 의용소방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침수보험 등 재해 및 재난 관련보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지불해 주고 영국의

로이드 같은 재보험사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제반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예산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 또 기업구조조정에는 몇조, 몇십조 원의 돈을 투입하면서 몇십 몇백만 명의 국민 생계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데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왜 몇천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데 벌벌 떱니까?

폭우가 내리 쏟아져 도시가 물에 잠기고 생명을 앗아 가고 전답 등 생활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는 엄청난 지원으로 다시는 재발을 방지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해 줄 것처럼 하다가 정작 침수된 물이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되면 재해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에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이후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국민에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충분한 재원마련대책과 그리고 충분한 복구 및 지원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야 모두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회복, 민생안정에 전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끝으로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여당은 모름지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실업으로 고통을 겪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바다와 같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야당일 때는 1 대 1의 개념으로 여를 견제하고 때로는 투쟁을 해야 되지만 여당이 된 지금은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의 문제점은 전체의 기준과 상식에 부응하는 한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의 투쟁일변도적인 그런 자세로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당은 남을 비판하는 데 그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라야 하고 성취적인 태도라야 합니다. 야당을 아무리 비판하고, 야당을 아무리 탄압하고, 야당을 아무리 괴롭혀도 그것은 여당의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미래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로서 새로운 정치 구현에 심혈을 쏟고 21세기 정치권에 새로운 좌표를 마련하고자 하고 이것이 국민에게 호응을 받으니까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오직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는 전근대적, 과거지향적 정치 양태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여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추적은 명백한 위법으로 현 정부의 야당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 김태정 씨는 자기 직할로 특수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와 같은 불법 사찰활동을 자행해 온 것입니다. 조흥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에 의하면 계좌번호 304-01-099990번의 1991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대검 중수부에 제출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행의 024-030347-01-019 계좌에 대해서도 구좌개설 당시부터 98년 9월 24일까지 전 입출금내역을 받아 간 것으로 하고 있고 시중 10여 개 은행의 상당 구좌도 전부 불법적으로 조사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야당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당의 일부 사람들, 나중에 권력투쟁에 패배할 다른 여당의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정권 때의 자금조사이든 현 정권 때의 자금조사이든 이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불법사찰은 반드시 응징되어서 개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렇게 무한정한 계좌추적을 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대통령은 진상을 소상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사과함은 물론 정치자금법,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불안케 한 중죄를 범한 박순용 검찰총장, 김태정 전 검찰총장, 이승구 대검 검사,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들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공복으로서뿐만 아니라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감안해서 불철주야 국민의 안위와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해야 될 검찰의 본래의 임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부는 특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불법계좌가 밝혀진 것이라고 하지만 전 구좌를 뒤지지 않고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세풍인지 살풍인지 모르지만 모든 구좌를 뒤지지 않고 이것은 세풍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풍사건을 담당하는 이승구 검사는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해서 무한정의 권한을 받은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괴담식의 이런 정치사찰이 횡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검중수부 이승구 부장검사는 91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95년 지방선거,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추적과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부영 의원이 차세대로 주목을 받자 수사를 당했는데 자기 지역구에 있지도 않은 가난한 고등학교에 이전도 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돈도 오가지 않은 고등학교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에 돈을 받았다고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응 의원은 당신이 운영하시던 어느 언론에 광고를 낸……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받아서 영장기간을 초월했다고 하면 금융실명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백지위임을 받은 것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무법지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조사했던 서울지검장은 지금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데 마땅히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공식자금에 대한 불법계좌추적은 서슬이 퍼랬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91년도부터 계좌추적을 했다면 그 당시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으로서 그 당의 정당후원금도 조사했을 것이고 92년도 대선에 있어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구좌도 조사를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 후에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미래의 대통령인 이회창 후보까지 계좌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대선자금을 모두 밝히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당한지 모든 사례를 밝혀야 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불법계좌추적은 오로지 신당창당과 정계개편을 위해서 국면전환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이용우 서울지방법원장은 불법 계좌추적한 압수수색영장을 즉각 제출하고 검찰의 무제한적 무차별적 불법계좌추적에 어떻게 협조하였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러한 탄압행위와 서울지검장 재직 시 1635호실에서 고문을 허용한 책임을 져서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당은 KBS 보도본부장을 앞세워서 KBS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노조위원장 현상윤 씨를 구속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탄압이 얼마나 지독하면 올 2월에 세풍사건을 담당한 최규성 판사가 사임을 했고 현재는 총풍사건을 담당하는 송성찬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법질서에 항거하다 못해서 스스로의 일터인 법원을 떠남으로써 법치주의의 파괴에 항거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세기가 채 다섯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할 줄 모르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자발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우리 한나라당에 의해서 반드시 척결되고 개혁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정부 제출)

2. 범죄신고자보호법안(정부 제출)

3.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04분)

○부의장 신상우 5분 발언을 마치고 이제 의사일정 제1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범죄신고자보호법안,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원 동해 출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연희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범죄신고자보호법안 및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 1998년 12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그 제안 취지는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 체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모국과의 관계유지를 바라는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둘째,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카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연장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국내토지의 취득·보유와 국내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고 넷째, 재외국민은 국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적상실 시에도 공무원연금이나 국가유공자보상금 등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을 지난 2월 5일 제200회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한 뒤 다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후 8월 11일 제206회국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거주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 대하여 공직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안 제11조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획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외국에 있는 종합상사 직원 등에 대하여 부재자투표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정 내용 외에 별도로 2건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2호의 재외동포의 정의를 인용하여 이 법의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정부조직법상 재외동포의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로 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3개 항을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권고사항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재중동포, 구소련 지역 동포 및 일본의 조선국적 동포와 그 자녀가 한국국적의 취득을 원할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한다, 다음 한국 내 불법체류 동포들의 안정적 생활과 귀국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마련하고 국내 체류동포를 지원하는 민간활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국내체류 조선족을 우리가 돌보아야 할 동포로 간주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이상입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의 개념에 일부에서 혈연주의를 가미하는 것이 좋겠다, 즉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와 중국의 조선족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엔협약이 혈연주의를 앞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또 중국 우리 조선족과 구소련의 고려족에 대해서 외교관계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범죄신고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범죄가 점차 흉폭화·조직화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보복범행을 우려하여 범죄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형사보좌인 제도를 도입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 범죄 신고자를 위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등에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경찰서장은 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 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범죄 신고자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99년 8월 1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적용대상 범죄의 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그 적용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저해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를 신설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 범죄를 조직폭력 및 마약관련범죄 등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의 우려가 큰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법 명칭도 이에 따라 '특정범죄 신고자등보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법 적용의 신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상충의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 등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방어권 및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제2항에 신설하여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형사보좌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사보좌인은 범죄 신고자 등을 위하여 수사·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범죄 신고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남용 및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종사자는 형사보좌인이 될 수 없음을 안 제6조제2항 단서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이 형사보좌인을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범죄 신고자 등과의 면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 신고자와 외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범죄 신고자 등과 합의를 원할 경우 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바 안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피의자·피고인 측이 범죄 신고자 등과의 면담을 원할 경우 범죄 신고자 등의 사전 승낙 등 일정한 요건하에 쌍방 간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인이 변론을 위하여 범죄 신고자 등의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와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범죄 신고자 등과의 면담을 신청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검사의 열람불허처분과 면담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이를 보완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선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퇴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피고인의 퇴정 하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만약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 제11조제6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신고자 친족의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범죄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우려는 범죄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된 여러 보호조치들 즉 신변안전조치, 범죄 신고자 구조금의 지급, 피고인 등에 대한 주요변동사항 통지 등의 조치에 대한 신청권자에 범죄 신고자의 친족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바르게 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 업무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수행하며 효과적인 감사결과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65세인 감사원장의 정년을 폐지하여 헌법상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헌법상 독립기관에 준하여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감사원의 파면요구사항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의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일반 조항을 신설하며 심사청구 제척기간과 심사결정을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각각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지난 8월 10일 제206회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한 뒤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후 8월 12일 제206회국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원장의 정년 폐지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원로를 영입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은 감사원장의 정년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는 점, 미국·오스트리아·브라질 등에서도 감사원장 정년이 70세인 점 및 현재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이 70세인 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행 정년 65세를 70세로 연장하기로 수정하였고 둘째,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발언권은 국회법에 규정될 사항으로 보아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의 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하여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범죄신고자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신상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서 계시는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신입니다.

법사위에서 신중한 토의와 고뇌 그리고 법정신을 존중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삽입해 주신 그 정신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념정의 문제입니다. 법안 제2조2항에 보면 '외국국적 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념규정에 따른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없는 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동포, 고려인이라고 불리우는 구소련 지역에 약 50만 동포, 기타 일본과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동포 가운데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 또 일본에 조선족을 가진 약 15만 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재외동포 540만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5만 동포가 이번 법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동포를 버리는 기민정책이라는 비난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은 사실상 재외동포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향후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특정지역 동포를 제외시킨다면 입법취지를 살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관한 개념정의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특례법 입법추진 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모든 법안이 한민족 혈통에 근거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의제기를 받은 외교통상부의 문제제기 이후 법무부의 최종안에서 혈통주의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특정지역 동포의 법적용 대상제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념정의는 그야말로 정의인 만큼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법무부의 특례법 초안처럼 이름에 걸맞게 포괄적으로 한민족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 소지자로 정의하도록 하되 이들에 대한 특례적용 시 외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소간의 혜택을 부여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혈통주의가 국제법상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도 꽤 있습니다. 이번 법의 제정에 우려를 표시한 중국도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를 원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별도의 개념정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각국 해외동포 사이의 평화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자리에서 이 법안에 반대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태인은 이천 년 전에 단 한 번의 피가 섞여도 유태인으로 인정하는 민족정신 때문에 2천 년간 떠돌다가 독립국가가 되었고 다수의 아랍국가에 포위되어 있는 형상처럼 되어 있음에도 국가와 민족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되어서 조국이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가 한때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며 기민정책을 썼다는 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외동포가 이렇게 되면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법, 현행 제도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사위원회 권고사항의 그 고뇌의 뜻을 깊이 이해해서 외교문제 해결과 우리 민족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진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부디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신상우 다음 서울 성북 갑 출신 류재건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 피를 나눈 사람들이 전 세계에 570만 정도 퍼져 나가 있습니다. 남쪽 인구 4700만, 북쪽 인구 2200만 합해서 7천만 중에 570만이 해외에 나가 있다면 심각한 숫자가 틀림없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나라를 버리고 좋은 땅 찾아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슬기롭게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기민정책이니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과 정부 책임자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반도에 남아 있는 우리들과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대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유유상종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법안이 시작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개념에 중국동포를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동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미주에 180만 명, 일본에 70만, 중국에 약 250만, 소련에 45만, 유럽과 남미에 한 20~30만 이렇게 모여서 570여만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 혈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민의 역사와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현지에서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고 문제점도 다 다릅니다. 이분들의 문제를 전부 포용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충실한 법을 만들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그렇지 못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재외동포법에 혈통주의를 채택해서 중국동포 등을 모두 포함시키게 될 경

우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부와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중국동포가 이번에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나 폴란드,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적인 트랜드, 경향이 그렇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절충적인 내용으로 만들 때도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외교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세련된 민주국가로서 200나라와 버성겨 경쟁하고 협력하는 현금의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우리 일만 고집하며 우리 혈통만 내세우다가 국제적인 촌놈이 될 우려를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여러분들이 배부 받으신 심사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200회 임시회 때부터 202회, 203회, 204회, 206회에 걸쳐서 여러 시간 토론하고 시민단체 대표들의 얘기도 듣고 교수들의 얘기도 참고하면서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서 부득이하게 중국동포를 제외하게 되었지만 중국동포도 우리의 동포인 만큼 법무부에서 중국동포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세 가지 심각한 권고조항도 특히 수렴하셔서 얼른얼른 이분들에게 섭섭하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제출된 후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외동포들로부터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IMF 상황에서 재외동포들도 모국의 경제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훌륭하게 공부한 1.5세, 2세들이 외국의 국제협력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증권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모국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이 좋은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재외동포들은 건국 이후 최초로 재외동포들의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상당히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이미 양당이 다 합의해서 이곳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이 법안을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신상우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갈 텐데 의결정족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에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전자판에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누르셨습니까?

다 누르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6, 반대 6, 기권 4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범죄신고자보호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김중위 의원 외 24인 발의)

(15시31분)

○부의장 신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권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권영자 정무위원회의 권영자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9년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에 24인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개월여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상 사실확인을 거쳐 소정의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법은 신체검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 국가유공자로 되실 만한 분들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기존의 수혜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의 신체장애율 개념이 기존의 상이등급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점이 있고 신체장애율 5% 기준은 외국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상이등급에 새로운 등급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신상우 그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7.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정부 제출)

(15시34분)

○부의장 신상우 의사일정 제5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전북 임실·순창 출신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박정훈 재정경제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1999년 7월 5일, 7월 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에 대한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입법화하고 조세불복절차의 개선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개칭하면서 그 구성원의 직급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이 기관이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독립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동법에서 원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그리고 상임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자신고를 함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의 고장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한의 특례를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및 역할의 민간이양의 일환으로 교육기능은 민간에서 담당하여 자유롭게 경쟁·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해 왔던 세무대학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21세기 세정개혁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세무대학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기능의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다만 교수 등에 대해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소관하는 국세청에서 전원 승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폐지법률안 부칙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수립 그리고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와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치적이고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신상우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41분)

○부의장 신상우 의사일정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9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경남 양산 출신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나오연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입니다.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난 5월과 6월 김종배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지대섭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동 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에 대하여 부가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둘째, 고셔병 등 희귀병 치료자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며 셋째,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넷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섯째,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여섯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일곱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봉급생활자의 세액부담을 경감하고자 99년 7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공제, 주택마련자금 공제, 교육비 공제 등 특별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비 공제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혜택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학원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신상우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45분)

○부의장 신상우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대구 달서 갑 출신이신 박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종근 예산결산위원회 박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8월 9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상황 보고와 함께 재해대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8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과 중산층 기반강화 및 서민생활의 지원 등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 전반에 걸쳐 폭넓은 종합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

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제5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약 5조 원 정도의 세수가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재원의 일부를 중산층의 기반강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2790억 원, 서민층의 자녀교육비·주택자금·의료보험 지원에 7155억 원, 농어민 및 취약계층 지원에 703억 원 등 총 1조 2981억 원의 규모로 편성·제출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 추가편성을 요청한 재해대책비는 피해복구비 1조 400억 원과 수해항구대책비 4000억 원 등 총 1조 4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가 기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후 반영을 요청한 재해대책비를 포함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비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의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요청한 1조 4400억 원에 수해항구대책비 50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490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요 재원은 국채발행 규모조정 등으로 조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특별경영자금 1조 1000억 원을 1조 6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재원은 특별히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농가에 특별히 별도 지원토록 하고 이에 따른 특별경영자금의 이차보전 소요를 정부안보다 162억 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고자 정부안보다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혜대상인원은 당초 정부안의 6200명에서 1100명이 증가하여 73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육료를 39억 원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27만여 명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해취약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0억 원, 상주기상대 신설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검사장비 구입에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가계지원비의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원의 가계지원비의 경우는 기정예산의 절감 등에 의한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곤란한 관계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증액에 소요되는 재원 2000억 원은 연말까지의 대출자금의 일부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서 2000억 원을 삭감·전용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제2회 추경예산의 순 규모는 2조 7381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1조 2981억 원보다 1조 44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채발행 감소 규모는 당초 2조 492억 원에서 609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 후의 전체 재정규모는 88조 4850억 원으로서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3조 5474억 원이 증가하여 98년 예산대비 재정규모 증가율은 9.67%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의 증액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 주택경기 활성화로 국민주택채권의 예상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3조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한 부대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의 수정안에는 이번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와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 가계지원비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재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절감분 및 기정예산의 절감으로 충당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수해의 재발방지 대책, 신속한 피해복구와 구호대책, 과수농가의 피해보상 문제, 농어가 부채문제, 서민층 및 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신상우 곧 의결하고자 하는데 장외에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종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절박한 일정 속에서도 연일 새벽 2시, 3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모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각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잘 명심하고 미덥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다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한 푼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받들어서 성심껏 국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11.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9분)

○부의장 신상우 의사일정 제11항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신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신범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및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 회의와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안 중 여권효력 상실처분제도를 삭제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신상우 부의장, 박준규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7월 9일 정부가 제출해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외무공무원인 외교직 공무원과 지난해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전입된 행정직 공무원을 통합하여 외교통상직으로 신설한 개정안은 효율적인 외교통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국방대학교설치법안(정부 제출)

14.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1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3항 국방대학교설치법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전북 전주·완산 출신이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장영달 국방위원회 장영달 의원입니다.

국방대학교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설치법안은 1999년 7월 2일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군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군 교육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및 국방정신교육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참모대학 교수부 및 직무연수부 등을 두고 둘째, 국방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은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하고 넷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99년 8월 10일 제206회국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원대학 직무연수부와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인 교수부 기타 필요한 부서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국방대학교에 두는 과정 중 특별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수 있으므로 기본과정과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셋째,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기본과정의 입학자격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기본과정과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등의 자격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7월 5일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전군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 역시 1999년 8

월 10일 제206회국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방대학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국방대학교설치법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시06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구 달서구 을 출신이신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해봉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0일과 1998년 11월 16일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9년 4월 27일 제203회국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이 모두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그 개정취지를 같이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2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협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시11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6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 군포 출신이신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류선호 행정자치위원회 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5일 남궁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임

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안과 1999년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임용결격공무원등의구제에관한특별법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남궁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법안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원용해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용결격공무원 등을 의무적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중위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법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기준에 의해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두 법률안 모두 그 내용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대상이지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 4월 20일 제203회국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안을 폐기하고 그 내용을 각기 수정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6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그 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기간인 3개월 내에 퇴직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특별 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설훈·장영철·손세일·박범진·노무현·김봉호·박상천·정균환 의원 외 97인 발의)

18.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이해구·이상배·이길재·정우택·김문수·김병태·노승우·정일영 의원 외 21인 발의)

(16시15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7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동 제18항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울 도봉 을구 출신이신 설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설훈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입니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과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설훈·장영철·손세일·박범진·노무현·김봉호·박상천·정균환 의원 외 97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 등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을 특별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한 특별채용 의무기간은 6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한편 일부체계를 정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해구·이상배·이길재·정우택·김문수·김병태·노승우·정일영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행 학교급식이 학기 중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시설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이외의 경비부담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결식학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 대상학생의 범위에 비급식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시키고 방학기간 중에도 결식 학생에 대해 급식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정부 제출)

(16시18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9항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동 21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동 22항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울 은평 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재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의원입니다.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 이상 정부가 제출한 4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중요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정보센터 등의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직으로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운영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평생학습관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목적 조항의 잘못 인용된 내용 등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에 일반 교원이 참여하여 조직 인사 및 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에 일반교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 조직 인사 및 학교의 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학인사위원회 및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와 예산 결산자문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신고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국가 우수인력의 관리차원에서 이를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내용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과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반드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법인에 대하여 굳이 공익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과 공익이사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이 법안은 분규가 발생한 학교법인의 조기 정상화 및 장차 정상화될 경우 그다음 단계에 대한 절차가 불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추후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경우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시이사의 선임기간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제한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으로 교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립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 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 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 문화 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제목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으로 변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다음은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박세직 의원 외 54인 발의)

(16시25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23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 갑 출신이신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신기남 문화관광위원회 신기남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11월 6일 박세직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과 축구 활성화를 꾀하고 아울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함에 있어서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및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98회국회 정기회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9년 8월 4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찬반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표결을 거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 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수탁사업자의 구비요건 중 '10년 이상 운영 경험' 규정을 삭제하여 국내기업에게도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한 적정환급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탁사업자의 위탁운영비 사용한도를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영경비 계상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경기장 건립비 및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 또는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거나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종사자 등의 투표권 구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절하고도 상세한 방지책을 보완한 이 법안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경기 수원 팔달 출신이신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팔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에서 통상 풀스게임이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어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정법률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 상태에서의 법안통과 즉 경기투표권 도입은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아 주십시오. 제안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나아가 축구활성화 및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축구계의 발전을 꾀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보고서의 시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7개 복권의 총연간매출액이 3500억 원 정도인 데 반해 경기투표권 도입 2차 년도인 2002년의 매출액 전망이 약 3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년도인 2005년에는 그 매출액이 8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익성 전망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월드컵 개최 지원과 국내 체육발전 기반강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기투표권 도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욱 문제 되는 것은 경기투표권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검토는 이 보고서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시장예측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경기투표권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의 보고서에서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28%만이 경기투표권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50%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경기투표권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대의 37%, 그리고 학생의 37.8%, 중졸 이하의 31.7%가 투표권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이 낮은 학생층 그리고 비지식인층에서 전체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권도입 찬성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복권도입이 저소득 비지식인 계층의 사행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입니다.

또한 경기복권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의 49.2%가 국민의 사행심 조장, 36.9%가 건전한 스포츠문화 저해, 7.7%가 청소년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경기투표권에 대해 도박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 투표권 도입이 이미 외국에서 선풍적 인기와 함께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성하고 있는 로또 그리고 로터리 같은 또 다른 복권허용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전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예측 그리고 경기투표권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개정안 통과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개정안 통과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의원회관에 계신 동료 의원들 나와 주시도록 노력하시고 어

떤 일이 있더라도 5시 반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석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서울 관악 갑구 이상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남경필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경청했습니다.

남 의원께서 반대토론으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상암동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에 10개 축구경기장의 신설 건립이 필요하고 또한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월드컵 축구대회는 일본과 공동개최됨으로써 일본과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경기장의 건설 등 시설의 확충과 우수 축구선수의 육성 등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고의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능력이나 또한 민간자본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법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축구 활성화 등 국내 축구계의 발전을 기함과 아울러 체육진흥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축구경기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판매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구투표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이미 작년 5월에 스포츠진흥투표의실시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0년도부터 축구투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2002년을 불과 몇 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의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전망과 매출액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해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로 규정을 하되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전문경영능력을 가진 민간 사업자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위탁경영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방침, 민영화로 나가는 추세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이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와 이 사업이 갖는 법률에 의한 독점적 공익적 수익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수탁사업자를 충실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들이 문화관광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수정·보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청소년 등에 대한 사행심 조장 등 사행성 확산을 유발시킬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수정안에서 미성년자 및 이 사업 종사자 등의 투표권 구매를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거나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하고 있는 등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도입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축구붐을 조성함과 아울러 사업수익을 통한 경기장건립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 법률안을 찬성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정족수가 약간 부족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정족수가 부족해요. 150명이 안 된다고요.

지금 145명입니다. 다섯 의원이 모자라는데 한 5분만 더 기다려 보시고 안 되면 오늘 막차 문 닫고 내일 하십시다. 내일 하는데, 명단을 보면 전부 허연데 계표사들, 다시 조사해 보세요. 어째 명단은 허연데 사람은 없어?

아까 토론 종결하고 표결 선포를 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보턴을 한 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50석 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나가자 마세요.

계표사들, 문을 좀 지키라!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보턴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명 중 찬성 111, 반대 43, 기권 9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2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 제25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광주 북 갑구 출신이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박광태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보증서의 자산위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있고 또 각종 세제혜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의 확보 방안이 없어서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저하됨으로써 기존 보증기관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신용보증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의 대상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지역신용보증기관의 기능을 특화하였으며 셋째,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지역신용보증기관의 재원조성의 취약성을 감안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각 신용보증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설립해서 신용보증재단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인 지역신용보증조합법안과 지역소기업신용보증기금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8월 10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두 법안은 제안 취지와 주요 법안이 유사하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켜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용

품과 그 생산체제를 시험·평가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안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며 셋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넷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8월 4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2항에서 인증심사원·시험설비 등 안전인증기관의 중요한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예시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5조제1항에서 외국과의 상호인증협정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며 셋째, 안 제16조1호에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넷째, 안 부칙 제1조에서 법률시행일을 하위법령의 개정, 관련업계의 준비기간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고려하여 2000년 1월 1일에서 2000년 7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26. 화장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59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26항 화장품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오양순 보건복지위원회 오양순 의원입니다.

화장품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병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과 오양순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화장품관리법안 등 2건의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8년 12월 9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이 의약품과 특성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의약품과 유사하게 규제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게 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약사법과는 별도의 화장품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품에 관련된 정의규정들을 두면서 일반화장품과는 별도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둘째,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현행 약사법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장품 등의 제조업에 대한 휴·폐업 및 재개의 경우 1월 미만의 휴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넷째,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과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 등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조나 수입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재료 등에 대하여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시설의 폐쇄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화장품의 가격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표시하도록 하되 이 법에 위반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화장품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화장품법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7.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9.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30.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3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17시04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27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동 28항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동 29항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동 30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동 31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이천 출신이신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황규선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99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의약분업이 약사법 개정으로 1년간 연기됨에 따라 1년 후에는 의약분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 10일 또한 4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황규선 의원 외 133인 발의안과 김병태 의원 외 25인의 발의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1999년 3월 4일 회부되어 온 황규선 의원 외 6인이 소개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1건에 대하여 각각 제202회국회와 제205회국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206회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 규정은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사업장가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와 형평성에 있어 불평등한 측면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임의가입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은 99년 2월 26일 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제조 담배에 대한 부담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자의적 집행의 우려가 있어 부담금의 상한액을 궐련 20개비당 10원으로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과 한미 간 담배양해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참여 한도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상한액을 궐련 20개비당 20원의 범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의 장기 등의 매매금지 대상에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기 등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행위를 추가하고 둘째, 장기 등의 적출·이식의 금지규정에서 「기타 이식에 부적합한 것」을 「이식대상자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하며 셋째,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동의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 선순위 2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증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손자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을 때에는 손자가 선순위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촌수 연장자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외에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법 시행일에 해당하여서는 원안의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은 제205회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06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13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홍신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의 실업과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극빈층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제도가 대폭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그 보호대상의 제한과 지원 수준의 미흡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98년 8월 20일 김허남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실직저소득자생활보호특별조치법안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4일 이건개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노숙자보호숙박시설설치를위한특별법안이 9월 25일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0월 15일 조세형 의원 외 10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10월 17일에 회부되었고 99년 7월 6일 김홍신 의원 외 131인이 발의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이 7월 7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의원이 소개한 생활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18일에 회부되었고 김홍신 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8월 14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 4건과 청원 2건을 198회국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와 제205회 국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했습니다.

제206회국회 제1차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의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하고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단일안으로 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면서 4건의 의원발의안과 2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를 현행 생활보호법상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적 성격이 강한 문구로 변경했고 둘째,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현행 생활보호법 연령과 근로가능 여부 등 인구학적 기준 대신에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기준을 도입 수급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했고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 공제 등 근로유인 방안을 두도록 했습니다.

셋째, 수급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 결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고 넷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의류, 교육, 장제, 해산, 자활급여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급여자에게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직업훈련 등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두도록 했고 여섯째,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현행 생활보호법이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과 저소득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저소득 실업자 빈곤층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기준의 도입을 통해 수급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 사항과 최저생계비 계측에 공정성을 도모한 사항 그리고 현행 생활보호법상 급여에 주거급여를 도입하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박준규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33.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34.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정부 제출)

35.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정부 제출)

36.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정부 제출)

(17시19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3항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동 34항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동 35항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동 36항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지대섭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4건의 동의안은 1999년 6월 12일, 7월 5일 그리고 7월 7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화 10억 불 상당의 엔화 자금을 들여오는 이 동의안은 차관사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에너지절약사업, 환경보전사업, 한일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동의안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과 이 차관의 도입이 외환수급의 조절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이 제기되었으나 동 차관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1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20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변경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64조 원의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보증채권 발행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을 12조 원 증액함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액을 12조 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당초 재원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문제점과 향후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소요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이 당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제기되었으나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조달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를 확충하기 위하여 동 기금채권의 당초 발행한도 8500억 원을 5조 850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의 외평채 추가발행에 따라 국내 금리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므로 발행시기의 결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외환수급 조절을 통한 환율안정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긴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정부 제출)

38.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정부 제출)

(17시26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광진 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김상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상우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및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에 체결된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OECD 모델에 기초하여 선진국형 협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대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만성적 대일 무역역조 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근로소득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학생, 산업연수생, 연예인, 체육인 등이 조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 7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경수로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차관을 공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9.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

(박성범 의원 외 37인의 소개로 제출)

(17시30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경기 안양 동안 갑구 출신이신 최희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최희준 문화관광위원회 최희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9년 6월 22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44의 30 이경복 씨 외 1449분으로부터 박성범 의원 외 37분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제출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심사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고 8월 4일 제206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명동, 충무로, 동대문시장을 포함하는 중구 전 지역의 경제·관광 중심 벨트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관광특구 안에서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광진흥기금 융자 시 타 지역보다 20% 가산되는 재정지원 등의 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관광특구는 19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명동, 충무로, 동대문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쇼핑관광지역이며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어서 관광진흥법령에 규정이 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광특구지정 신청이 있게 되면 정부는 적극 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심사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준규 그러면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12인)

(17시34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40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 동료 의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 명단은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인쇄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정기국회를 앞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같이 참 뜻있는 회의를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재석하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국회 위촉 대의원 명단은 끝에 실음)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참 조)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국회 위촉 대의원 명단(12인)

한나라당

김 정 수　김 정 숙　김 홍 신　박 시 균
정 의 화　황 성 균

새정치국민회의

김 인 곤　손 세 일　이 성 재　장 영 철
조 성 준

자유민주연합

노 승 우

※임기 : 1999.8.1.～2002.7.31(3년)

○출석 의원(275인)

강경식	강삼재	강성재	강용식
강재섭	강종희	강현욱	국창근
권기술	권영자	권오을	권익현
권정달	권철현	길승흠	김경재
김고성	김광수	김광원	김근태
김길환	김 덕	김도언	김동욱
김명규	김명섭	김명윤	김무성
김문수	김민석	김병태	김봉호
김상우	김상현	김선길	김성곤
김수한	김영구	김영배	김영선
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환	김옥두	김운환	김원길
김의재	김인곤	김인영	김일주
김재천	김정수	김정숙	김종배
김종필	김종하	김종학	김종호
김중위	김진배	김진재	김찬우
김찬진	김 철	김충일	김충조
김칠환	김태랑	김태식	김태호
김학원	김허남	김현욱	김형오
김호일	김홍신	김홍일	나오연
남경필	남궁진	노기태	노무현
노승우	류선호	류재건	류종수
류홍수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광태	박구일	박근혜	박명환
박범진	박상규	박상천	박성범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신원
박우병	박원홍	박정훈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천	박준규
박찬주	박철언	박태준	박헌기
박희태	방용석	배종무	백남치
백승홍	변정일	서상목	서석재
서정화	서정화	서청원	서한샘
서 훈	설 훈	손세일	송업교
송현섭	송훈석	신경식	신기남
신낙균	신상우	신영국	신영균
심정구	안동선	안상수	안상수
안재홍	안택수	양성철	양정규
어준선	오세응	오양순	오용운
원유철	유용태	윤원중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희	이건개
이경재	이규정	이규택	이긍규
이길재	이동복	이동원	이미경
이부영	이사철	이상득	이상만
이상배	이상수	이상현	이상희
이석현	이성호	이세기	이수인
이신범	이양희	이영일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웅희	이원범
이원복	이윤성	이윤수	이응선
이인구	이재명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무	이중재	이태섭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회창	이훈평	임복진	임인배
임진출	장성원	장영달	장영철
장을병	장재식	전석홍	전용원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상구	정세균	정영훈
정우택	정의화	정일영	정재문
정창화	정한용	정형근	정호선
정희경	조성준	조세형	조 순
조순승	조순형	조영재	조웅규
조익현	조진형	조찬형	조한천
조홍규	주진우	지대섭	차수명
채영석	천정배	최선영	최연희
최재승	최희준	추미애	하경근
하순봉	한광옥	한승수	한영수
한영애	한이헌	한화갑	함석재
함종한	허남훈	허대범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황규선	황낙주
황성균	황우여	황학수	

○청가 의원(6인)

김동주	김복동	김용갑	박세직
이한동	최형우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종필
재정경제부장관	강봉균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법무부장관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재
교육부장관	김덕중
농림부장관	김성훈
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
정보통신부장관	남궁석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건설교통부장관	이건춘
해양수산부장관	정상천
기획예산처장관	진 념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박용옥

교 육 부 차 관	이 원 우
문화관광부차관	김 순 규
노 동 부 차 관	김 상 남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김진재	1999. 8. 6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	김태식	1999. 8. 9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치개혁입법특별	신영국	권오을	김영진	한나라당
	노기태	박주천	변정일	
	이규택	이사철	이상배	
	이원복	정의화	정형근	
	안동선	이상수	남궁진	새정치국민회의
	설 훈	송훈석	류선호	
	이규정	천정배		
	김학원	김고성	정일영	자유민주연합
	허남훈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박종근	한나라당	1999. 8. 6
	조홍규	새정치국민회의	
	오장섭	자유민주연합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	김문수	한나라당	1999. 8. 9
	조성준	새정치국민회의	
	이건개	자유민주연합	
행정자치	류선호	새정치국민회의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강창희	이긍규	자유민주연합	1999. 8. 10
	변웅전	이재선		
정보	강창희	이긍규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김정숙	보건복지	교육	한나라당	1999. 8. 12
오양순	교육	보건복지		
김종필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	자유민주연합	
박태준	농림해양수산	교육		
강종희	환경노동	농림해양수산		
김허남	교육	농림해양수산		
차수명	법제사법	행정자치		
김학원	행정자치	법제사법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	김일주	조영재	자유민주연합	1999. 8. 3
재해대책특별	양성철	이용삼	새정치국민회의	1999. 8. 5
정치개혁입법특별	정일영	김기수	자유민주연합	1999. 8. 12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구대표의원	신대표의원	연월일
새정치국민회의	강창희	이긍규	1999. 8. 9

○의안 제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8월 5일 전석홍·류선호·박신원·이해봉·박종우·강삼재·김광원·김기수·김영준·김영진·김옥두·김찬진·김충조·김학원·박구일·백남치·박상규·양정규·원유철·이상수·이성호·이원범·이윤성·이형배·장성원·정균환·정문화·정창화·추미애·홍문종 의원 발의)

8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8월 6일 함종한 의원 외 23인 발의)

8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어장관리법안

(8월 9일 정부 제출)

8월 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8월 9일 정부 제출)

8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무총리(김종필) 해임 건의안

(8월 10일 이부영 의원 외 13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8월 11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

(이상 2건 8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대안)

(8월 11일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화장품법안(대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8월 11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대안)
(8월 12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8월 9일 정부 제출)
(8월 11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범죄신고자보호법안
(1996년 11월 17일 정부 제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1998년 12월 24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8월 12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 24인 발의)
(8월 11일 정무위원장 보고)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5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8월 11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1998년 12월 2일 정부 제출)
(8월 11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국방대학교설치법안
(7월 2일 정부 제출)
(8월 11일 국방위원장 보고)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998년 11월 26일 정부 제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1998년 12월 2일 정부 제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4월 23일 설훈·장영철·손세일·박범진·노무현·김봉호·박상천·정균환 의원 외 97인 발의)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례법안
(5월 21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8월 11일 교육위원장 보고)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1998년 11월 6일 박세직 의원 외 54인 발의)
(8월 11일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1998년 10월 29일 정부 제출)
(8월 11일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2월 26일 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이상 2건 8월 11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29일 정부 제출)
(8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19건 수정 의결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6월 12일 정부 제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이상 2건 7월 5일 정부 제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이상 2건 7월 7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8월 11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1998년 12월 2일 정부 제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7월 9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8월 11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7월 2일 정부 제출)
(8월 12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7월 5일 정부 제출)
(8월 11일 국방위원장 보고)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4월 26일 이해구·이상배·이길재·정우택·김문수·김병태·노승우·정일영 외 21인 발의)
(8월 11일 교육위원장 보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월 26일 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 발의)
(8월 11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이상 11건 원안대로 의결

국회의원(방용석) 윤리심사의 건

(5월 17일 이부영 의원 외 131인 발의)

(8월 11일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1998년 11월 27일 김허남·박승국·정희경 의원 외 30인 발의)

(8월 12일 교육위원장 보고)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 24인 발의)

(8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5월 7일 김종배·김상현·김현욱·김무성·김종하·박관용·박세직·안상수·이신범·황규선·김홍신·이규정·이미경·김경재·김성곤·김원길·박정훈·박찬주·안동선·류재건·이길재·이성재·장영달·장재식·조순승·정한용·김광수·정일영·조영재·지대섭·장을병·박범진·이해봉·천용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5월 27일 김민석·김명규 의원 외 2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6월 22일 지대섭·이긍규·박정훈·정일영·정한용·변웅전·어준선·정우택·장재식 의원 외 2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7월 2일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7월 5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8월 12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20일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98년 11월 16일 정부 제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안

(1998년 11월 25일 남궁진·이상수·김원길·한화갑·김영배·김옥두·김충조·류선호·박종우·원유철·이성재·장성원·추미애 의원 외 91인 발의)

임용결격공무원등의구제에관한특별법안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 24인 발의)

(이상 4건 8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지역신용보증조합법안

(7월 7일 박광태·김종학·장영철·김칠환·손세일·이정무·서석재·김경재·김명규·남궁진·이긍규·천정배·김병태 의원 외 95인 발의)

지역소기업신용보증기금법안

(8월 2일 신영국·맹형규·김홍신 의원 외 17인 발의)

(이상 2건 8월 12일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화장품법안

(1997년 1월 23일 김병태·정희경·김명섭·정균환·이협·천용택·이길재·최재승·정세균·최희준 의원 외 12인 발의)

실직저소득자생활보호특별조치법안

(1998년 8월 21일 김허남 의원 외 20인 발의)

노숙자보호숙박시설설치를위한특별법안

(1998년 9월 4일 이건개 의원 외 20인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1998년 10월 5일 조세형·한화갑·김원길·이석현·이성재·김명섭·김병태·박상천·신낙균 의원 외 94인 발의)

화장품관리법안

(1998년 11월 3일 오양순 의원 외 25인 발의)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3월 9일 황규선·김찬우·김정수·김정숙·김홍신·박시균·정의화·황성균 의원 외 127인 발의)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4월 14일 김병태·김명섭·김정수·이영일·정희경 의원 외 21인 발의)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

(7월 6일 김홍신·김정수·김정숙·김찬우·김광원·박시균·신경식·서상목·서정화·이강두·이부영·이상득·이규택·안택수·정의화·주진우·하순봉·황규선·황성균 의원 외 113인 발의)

(이상 8건 8월 12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이상 1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의안 철회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안

(1998년 12월 11일 류선호·김원길·한화갑·김민석·국창근·김태식·이석현·채영석 의원 외 97인 발의)

8월 1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유아학원 교육비 소득공제에 관한 청원

(1999년 8월 4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24의 3 한국학원총연합회 미술교육협의회 회장 이인섭 외 4만 8640인으로부터 나오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 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축산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8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931-3 축산기업 남양주시지부장 강태규 외 11인으로부터 이성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 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무공훈장 등 수여에 관한 청원

(1999년 8월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356 전진근으로부터 박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사면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8월 1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로부터 이미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

(1999년 6월 22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44-30 이경복 외 1449인으로부터 박성범 의원 외 37인의 소개로 제출)

(8월 6일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및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관한 청원

의왕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국고지원 등에 관한 청원

(이상 2건 1996년 9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의왕시장 신창현으로부터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8월 6일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2월 14일 전남 여수시 경호동 22-11번지 양심수군문제해결을위한모임 대표 문치웅 외 778인으로부터 장영달 의원 외 50인의 소개로 제출)

(8월 11일 국방위원장 보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현대아파트 9동 406호 심재철 외 2277인으로부터 황규선·김정숙·김홍신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8월 11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국공유지불하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

(1996년 11월 15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미성아파트 2동 605호 이범홍 외 58인으로부터 서청원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

행정절차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1996년 11월 25일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5가 147-1 박윤흔 외 18인으로부터 황우여·이해봉 의원의 소개로 제출)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청원

(1997년 7월 4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622-31 안양시위생단체협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안

고 김준배 군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1997년 10월 2일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350-11 이창복 외 2707인으로부터 조홍규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

대통령기록보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로부터 류재건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5건 8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의 예산 산업대학교로의 분리 독립에 관한 청원

(1996년 9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번지 삼성아파트 108-702 오민환 외 40인으로부터 이우재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

계명대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에 관한 청원

(1996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357번지 동산아파트 611호 강대인으로부터 추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복직·미복직 교사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1996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동아아파트 7동 503호 최연호 외 683인으로부터 설훈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

교수재임용제 관련법규 개정에 관한 청원

(1996년 11월 15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 인문관 C동 735호 교수재임용제'악법' 개정을위한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윤봉용 외

1943인으로부터 천정배 의원 외 9인의 소개로 제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6년 11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장성마을 건영아파트 304-1301 윤봉용 외 2인으로부터 설훈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에 관한 청원

(1997년 3월 3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65-21 제2외국어교사회 회장 채수연 외 2663인으로부터 김한길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 실시 유보에 관한 청원

(1997년 3월 3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74 교육개혁연대회의 대표 오성숙 외 4인으로부터 김한길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7년 6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9-6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경자 외 100만 24인으로부터 서상목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의 예산 산업대학으로의 분리 독립에 관한 청원

(1997년 6월 19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00-1 예산군개발위원회 회장 김석기, 예산리예농총동창회 회장 유근홍 외 33인으로부터 서상목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국립 '호남원예정보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청원

(1997년 8월 11일 전남 나주시 중앙동 3번지 국립호남원예정보전문대학설립추진위원장 이운직 외 73인으로부터 정호선 의원 외 14인의 소개로 제출)

초·중등교육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

(1997년 8월 22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74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오성숙 외 1606인으로부터 설훈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

유치원만의 무상교육 실시 반대에 관한 청원

(1997년 10월 22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빌딩 811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김상근 외 1만 3999인으로부터 이재선 의원 외 38인의 소개로 제출)

실업고 교사의 산업체 경력인정에 관한 청원

(1997년 11월 3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481-1 신안아파트 1-109 산업체경력교사서울지역대표 이민황 외 678인으로부터 설훈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사립학교 재정 결함 지원금 교부에 관한 청원

(1998년 12월 24일 서울시 중구 만리동1가 54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김정남 외 2인으로부터 이재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14건 8월 12일 교육위원장 보고)

국제종합무역전시장 건립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3동 183 고양시자족권수호시민연대회의 상임대표 강태희로부터 이택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수도권종합전시장 인천 유치에 관한 청원

(1999년 4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수도권종합전시장인천유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상규, 이명복으로부터 이강희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8월 12일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생활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로부터 이성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7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로부터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8월12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이상 2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7월 20일 대한적십자사총재로부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 요청이 있었음

○서면질문서 제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관한 질문서

(8월 10일 김문수 의원 제출)

장관부인 호화의상 로비사건에 관한 질문서

(8월 10일 최연희·정형근·안상수·박헌기·황우여·이규택 의원 제출)

이상 2건 8월 11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금성산되찾기시민연합의 민원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8월 2일 정부 제출)

시화공단폐기물 처리업체 위치변경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한국건설자원공영과 수도권골재 비축기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8월 3일 정부 제출)

한국공영특별단체교섭회의록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8월 7일 정부 제출)

한국조폐공사 경영진단보고서와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8월 9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강용식	강종희	강현욱	국창근
권오을	권익현	권정달	권철현
길승흠	김고성	김광원	김길환
김도언	김동욱	김명규	김명섭
김무성	김민석	김병태	김상우
김선길	김성곤	김수한	김영선
김영일	김영준	김영환	김옥두
김운환	김의재	김인곤	김인영
김일윤	김일주	김정숙	김종학
김중위	김진재	김찬우	김충일
김충조	김태랑	김태식	김학원
김허남	김호일	김홍신	나오연
남경필	남궁진	노무현	노승우
목요상	박광태	박구일	박근혜
박상천	박성범	박세환	박승국
박신원	박우병	박정훈	박종우
박종웅	박준규	박찬주	박철언
박태준	박헌기	방용석	배종무
백승홍	서상목	서석재	서한샘
서　훈	송현섭	신기남	신영국
안동선	안상수	안상수	안택수
양성철	어준선	오세응	오양순
유용태	류재건	류흥수	윤철상
이강두	이강희	이건개	이경재
이규정	이긍규	이미경	이부영
이상득	이상만	이상수	이상현
이상희	이석현	이성호	이신범
이완구	이용삼	이원복	이응선
이재오	이재창	이중재	이태섭
이해구	이해찬	이　협	이훈평
임복진	임인배	임진출	장영달
장을병	장재식	전석홍	전용원
정동채	정문화	정상구	정세균
정영훈	정의화	정창화	정한용
정호선	정희경	조성준	조세형
조순승	조웅규	조익현	조진형
조한천	조홍규	지대섭	차수명
채영석	천정배	최희준	추미애
하순봉	한영수	한영애	한화갑
함종한	허대범	홍문종	황규선
황낙주	황성균	황우여	

찬성 의원(111인)

강용식	강종희	강현욱	국창근
권오을	권익현	권정달	길승흠
김고성	김길환	김동욱	김명규
김명섭	김병태	김상우	김선길
김성곤	김수한	김옥두	김운환
김의재	김인곤	김인영	김일주
김종학	김충일	김충조	김태랑
김태식	김학원	김허남	김호일
나오연	남궁진	노무현	노승우
목요상	박광태	박구일	박근혜
박상천	박성범	박세환	박신원
박정훈	박종우	박종웅	박찬주
박철언	박태준	박헌기	방용석
배종무	서상목	서석재	서한샘
송현섭	신기남	안동선	양성철
어준선	유용태	류재건	윤철상
이　협	이강희	이경재	이규정
이긍규	이부영	이상득	이상만
이상수	이상현	이상희	이석현
이성호	이완구	이태섭	이해구
이해찬	이훈평	임복진	임진출
장영달	장을병	장재식	전용원
정동채	정상구	정세균	정영훈
정한용	정호선	정희경	조성준
조세형	조순승	조익현	조한천
조홍규	차수명	채영석	천정배
최희준	추미애	한영수	한영애
한화갑	허대범	홍문종	

반대 의원(43인)

권철현 김광원 김도언 김무성
김영선 김영일 김영준 김영환
김일윤 김정숙 김중위 김진재
김찬우 김홍신 남경필 박승국
박우병 서 훈 신영국 안상수
안택수 오세응 오양순 류홍수
이강두 이신범 이용삼 이원복
이응선 이재오 이재창 임인배
전석홍 정문화 정의화 정창화
조웅규 조진형 하순봉 함종한
황규선 황낙주 황성균

기권 의원(9인)

김민석 박준규 백승홍 안상수
이건개 이미경 이중재 지대섭
황우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강용식 강종희 강현욱 국창근
권영자 권오을 권익현 권정달
길승흠 김경재 김고성 김광원
김도언 김명규 김명섭 김명윤
김민석 김상우 김선길 김성곤
김수한 김영선 김영준 김영환
김옥두 김의재 김인곤 김일주
김재천 김종배 김종학 김중위
김진재 김찬진 김충조 김학원
김허남 김형오 김호일 김홍신
나오연 남경필 남궁진 노승우
류선호 목요상 박관용 박광태
박구일 박범진 박상규 박상천
박성범 박시균 박신원 박우병
박원홍 박정훈 박종근 박종우
박주천 박찬주 박철언 박태준
박헌기 박희태 방용석 배종무
서상목 서석재 서정화 서정화
서한샘 설 훈 송현섭 신기남
신낙균 신영국 안동선 안상수
안상수 안재홍 양성철 어준선
오세응 오양순 원유철 유용태
류재건 류홍수 윤원중 윤철상
이강두 이강희 이경재 이규정
이규택 이긍규 이동복 이미경
이부영 이상만 이상수 이상현
이석현 이세기 이신범 이완구
이용삼 이원복 이윤성 이윤수
이응선 이인구 이재선 이재오
이중재 이태섭 이해구 이훈평
임복진 임인배 임진출 장성원
장영달 장영철 장을병 장재식
전석홍 전용원 정균환 정동채
정문화 정상구 정세균 정영훈
정우택 정의화 정일영 정재문
정한용 정형근 정희경 조순승
조웅규 조한천 조홍규 주진우
지대섭 차수명 채영석 천정배
최연희 최재승 최희준 추미애
한영수 한영애 한화갑 함석재
함종한 허대범 홍문종 황규선
황성균 황우여

찬성 의원(156인)

강용식 강종희 강현욱 국창근
권영자 권오을 권익현 권정달
길승흠 김경재 김고성 김광원
김도언 김명규 김명섭 김명윤
김민석 김상우 김선길 김수한
김영준 김영환 김옥두 김의재
김인곤 김일주 김재천 김종배
김종학 김중위 김진재 김찬진
김충조 김학원 김허남 김형오
김호일 나오연 남궁진 노승우
류선호 목요상 박관용 박광태
박구일 박범진 박상규 박상천
박시균 박신원 박우병 박원홍
박정훈 박종근 박종우 박주천
박찬주 박철언 박태준 박헌기
박희태 방용석 배종무 서상목
서정화 서정화 서한샘 설 훈
송현섭 신기남 신낙균 신영국
안동선 안재홍 양성철 어준선
오세응 오양순 원유철 유용태
류재건 류홍수 윤원중 윤철상
이강두 이강희 이경재 이규정
이규택 이긍규 이동복 이미경
이부영 이상만 이상수 이상현
이석현 이세기 이신범 이완구
이용삼 이원복 이윤성 이윤수
이응선 이인구 이재선 이재오
이중재 이태섭 이해구 이훈평
임복진 임인배 임진출 장성원
장영달 장영철 장을병 장재식

전 석 홍　　전 용 원　　정 균 환　　정 동 채
정 문 화　　정 상 구　　정 세 균　　정 영 훈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일 영　　정 재 문
정 한 용　　정 희 경　　조 순 승　　조 웅 규
조 한 천　　조 홍 규　　주 진 우　　지 대 섭
차 수 명　　채 영 석　　천 정 배　　최 연 희
최 재 승　　최 희 준　　추 미 애　　한 영 수
한 영 애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종 한
허 대 범　　홍 문 종　　황 성 균　　황 우 여

반대 의원(6인)

김 영 선　　김 홍 신　　남 경 필　　박 성 범
안 상 수　　정 형 근

기권 의원(4인)

김 성 곤　　서 석 재　　안 상 수　　황 규 선